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1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희정 · 박정하 · 박성민
김은혜 · 이종배 · 김대식
김승수 · 김도읍 · 권영진
배준영 · 김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 ----- ----- ----- ----- 「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 전확인의 신고가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u>전동킥보드</u> 나. <u>전동이륜평행차</u> 다. <u>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운 직일 수 있는 자전거</u> 라. <u>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0. ~ 35. (생략)	20. ~ 35. (현행과 같음)